

의안번호	제 819 호
의 결 연 월 일	2021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발 의 자	황규철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1년 8월 일

#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황규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19
----------	-----

발의연월일 : 2021년 6월 일  
발 의 자 : 황규철, 김기창, 서동학,  
박우양, 연철흙, 전원표,  
박형용, 오영탁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이용편의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전담부서의 설치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 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 마. 저상버스 운행실태 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 사.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기능한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안 제12조)
- 아.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안 제14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교통정책과

라. 조례안 예고 : 2021. 8.18. ~ 2021. 8.23.(의회 홈페이지)

##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8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상버스”란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체가 낮고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버스를 말한다.
2. “광역이동지원센터”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운행자,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를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
7. 교통약자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버스를 구입할 경우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④ 도지사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할 하는 지방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저상버스 운행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군의 저상버스 운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도지사는 시·군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원칙)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 시·군간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행시간(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원칙)
2. 운행지역
3. 이용요금
4. 이용방법(비예약 운영 원칙)
5. 그 밖에 이용자 편의에 관한 사항

제11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도지사는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간 연계를 통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시·군 이동지원센터 간 연계
2.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시·군간 정보협력 및 지원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항 홍보 및 홈페이지 등 운영관리
4. 타 시·도 이동지원센터와의 연계
5.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교육)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 13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교육
4.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
5.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시장·군수가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직접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거나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연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다.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

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③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
2.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
3.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 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상버스등의 도입, 저상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⑥ <생략>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저상버스 도입 지원
-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2. 비용발생 요인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
-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설치 및 운영비용 발생

## 3. 관련조문

- 제5조(저상버스의 도입)
-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 제8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4. 비용추계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금 규모는 2021년의 경우 현재 세출예산 편성액을 계상하고, 이후는 최근 4년간(2018~2021)의 평균 예산액을 적용
  - 4년간 평균 예산액(국·도비) : 3,095,000천원(국비 1,447,000, 도비 1,648,000)
  - \* 시군비 1,775,000천원 별도
-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기존 시·군 조직을 통합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 적용
  - 하드웨어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 약 500,000천원
  - 유지보수비용 : 연 50,000천원

나. 추계 결과 : '21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5,704,962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 국고보조금 및 도비(일반회계)

- 저상버스 도입보조

· CNG버스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기버스 : 국비 46%, 도비 27%, 시군비 27%

· 수소버스 : 국비 24%, 도비 38%, 시군비 38%

-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도비(일반회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1,226,241	1,447,000	1,447,000	1,447,000	1,447,000	7,014,241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고보조금	1,226,241	1,447,000	1,447,000	1,447,000	1,447,000	7,014,241
세 출		3,124,962	3,145,000	3,145,000	3,145,000	3,145,000	15,704,96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2,624,962	3,095,000	3,095,000	3,095,000	3,095,000	15,004,962
	광역이동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5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700,000
재원 조달		3,124,962	3,145,000	3,145,000	3,145,000	3,145,000	15,704,962
의존 재원	소 계	1,226,241	1,447,000	1,447,000	1,447,000	1,447,000	7,014,241
	보조금	1,226,241	1,447,000	1,447,000	1,447,000	1,447,000	7,014,241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898,721	1,698,000	1,698,000	1,698,000	1,698,000	8,690,721
	지방세	1,898,721	1,698,000	1,698,000	1,698,000	1,698,000	8,690,721
	세외수입	-	-	-	-	-	-
시·군비		1,499,921	1,775,000	1,775,000	1,775,000	1,775,000	8,599,921